

목 차

1. 법무·법률
임원의 권한과 책임
2. 회계·세무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세신고
3. 인사·노무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과 보험료 변경 확인요령
4. 자금조달
우선출자 진행 절차
5. 조직변경
인허가 및 업력 승계 여부 검토

23년 6월의 경영정보[자금조달]

쿠팡 협동조합

우선출자 진행 절차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 22조 2(우선출자),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2(우선출자 협동조합)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협동조합은 경영이 투명해야 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시행령 제8조 2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이어야 한다고 자격요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함)에 법 제 49조의 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부시행령 제 8조 2에는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청약, 납입, 발행, 증서의 형식, 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우선출자자 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우선출자자의 양도, 우선출자자의 총회, 통지와 최고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5조에는 발행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출자 제도를 시행하려는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내용을 설립신고를 한 해당 지자체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대한 내용 중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과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영공시에 대한 질의는 협동조합 상시상담 페이지**에

문의하시거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co.kr) - 협동조합 현황 - 경영공시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co.kr) - 운영안내 - 상시상담

양호한 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은 예를들어 납입출자금, 우선출자, 적립금, 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의 합계가 1억원이라고 할 때, 부채 총액은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기총자본은 재무상태표에서 대변(우측변)에 있는 자본으로서 납입출자금, 우선출자, 적립금, 이익잉여금을 합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우선출자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에는 공모(Public Offering)과 사모(Private offering)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가 여부가 기준이 되며 우선출자협동조합이 불특정 다수(즉,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 조직 특성상 조합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시상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30까지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 2,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선출자 발행한도는 아직 납입출자금이 작은 신생협동조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들어서 있어서 어느정도 자기자본이 확보된 협동조합이 신규 시설투자, 기존시설의 확대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는데 있어 우선출자가 적절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발행절차는【공고-청약-납입-증서발행-배당실행-매입소각】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공고, 청약, 납입, 증서발행은 발행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배당실행은 증권을 발행한 이후 증권에 명기된 시점에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매입 및 소각 절차는 조합이 발행한 증권을 출자자로부터 다시 재매입할 필요가 있을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공고시에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 발행가액, 납입기입 및 모집방법(공모, 사모)를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 우선출자의 내용에는 해당협동조합의 웹페이지를 포함하여 공고 대상이 확인할 수 있는 홍보매체(홈페이지, SNS, 일간신문 등)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총액한도를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30) 계산을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청약절차에서는 협동조합의 명칭,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해당 협동조합의 자기총자본,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인수금액을 취급하려는 금융기관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